

□ 고령화 대비 신탁업 활성화 시급하다

현황

- ❖ 그 동안 은행이 금전신탁 위주로 독점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국내 신탁업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
- ❖ 국내 신탁업은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 및 운용 차원에서 활성화가 시급하며, 특히 개인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문제점

- ❖ 종합재산제도의 비활성화, 집단투자펀드(CIF) 불허용, 기타 자산관리 업무와의 차별성 부족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탁업 발전의 제약 요인이 존재
- ❖ 동양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맡기거나 재산이 노출되는 데에 거부감
- ❖ 신탁업 경영 허용으로 각 금융기관간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건전한 신탁업무 발전이 저해될 우려



과제

- ❖ 신탁을 통한 세대간 투명한 재산이전을 위해 세제와 절차 혜택 고려
- ❖ 종합재산신탁 제도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펀드 허용
- ❖ 신탁업무와 PB 등 자산관리 업무의 통합 내지 역할 조정 필요
- ❖ 각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 신탁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
- ❖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차별적인 신탁상품 개발

1. 은행 독점 신탁업의 쇠퇴

- 은행이 독점적으로 겸영하고 있는 국내 신탁업은 국내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그동안 국내 신탁업은 관련 법률이 은행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은행에게만 겸영이 허용되어 있었음
 - 신탁업법상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은행에만 적용이 배제됨¹⁾
 - 은행 외의 금융기관에는 적용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타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이고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증권·보험사의 경우 사실상 신탁업 영위가 불가능)
 - 국내은행의 신탁상품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되며 금액기준으로는 금전신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신탁은 재산의 관리·처분·증식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국내 신탁업은 경제개발 정책 수행과정에서 대부분 금전신탁에 치중함으로써 재산관리 기능이 극히 취약함

< 신탁의 분류 >

금전신탁	-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 받아 신탁회사가 대출, 유가증권, 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하여 신탁기간 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 ○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 ○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미지정
재산신탁	-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수탁 받아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하고 신탁 만기 시 신탁 재산을 운용현상대로 또는 처분하여 교부하는 신탁 ○ 유가증권신탁 : 주식, 채권 등 ○ 금전채권신탁 : 금전채권 (추심대전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 ○ 동산신탁 : 선박, 항공기, 차량, 중기, 기타 설비, 기계, 기구 등 ○ 부동산신탁 : 토지 및 그 정착물 등

1) 제한 규정에는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은 '주요 출자자'(최대 주주 외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말아야 하며,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함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신탁업은 금전신탁의 고금리 경쟁, 확정금리상품의 비중 과다,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수탁 중지 등으로 쇠퇴되고 있음
 - 1998년 기준 158.1조원에 달했던 은행신탁 수탁고는 외환위기 이후 운용 자산의 부실로 신탁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면서 급속히 감소되어 2005년 9월말 현재 47.4조원에 머물고 있음
 - 금융권역별로 적용되던 간접자산관련법을 기능별로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으로 은행신탁의 취급상품 범위와 영역은 더욱 축소됨 (현재 은행의 신탁상품은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신탁 등 단독운용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임)
 -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자산운용사로 규정됨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에 한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적용받게 됨. 이에 따라 그동안 「신탁업법」에 의하여 원본미보전실적배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2004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이 급격히 축소됨
 - 2005년 11월 기존 증권·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할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 대신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겸영을 허용한 것의 효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보론 참조)

< 국내 은행 금전신탁 구성 추이 >

(말잔 : 조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9
불특정 금전	131.2	108.5	60.3	58.8	40.0	30.7	25.8	21.1
특정 금전	26.9	11.4	17.5	22.5	33.7	27.4	22.1	26.3
계	158.1	119.9	77.8	81.3	73.7	58.1	47.9	47.4

자료 : 금융감독원

2. 고령화 시대 대비 신탁업 활성화 시급

○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국내 신탁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특히 개인신탁의 육성이 중요함

- 의학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에 대비한 자산관리 마인드가 높아지고 있어 신탁업은 이제 과거의 불

2) 국내 신탁업은 중장기 설비자금의 공급 및 은행 수신의 보조 수단으로서 금전신탁 위주로 영업활동이 전개되었으며, 금전신탁 중 불특정금전신탁은 간접자산운용법 시행으로 2004년 7월 이후 신규 수탁이 중지됨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예금상품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고령화 시대 대비 자산관리 및 운용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국민들의 자산소유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재산신탁 및 유언상속 관련 업무에 대한 개인신탁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업무의 취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확정기여형(DB), 확정급여형(DC) 등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전환율이 어느 정도 빠르게 진척되는 가에 달려있지만 2010년에 15~40조원 규모, 2015년 40~90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투자증권 2005.9)³⁾
-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중 자산관리업무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신탁업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

운용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DB)형에 한함) ○ 적립금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
자산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 수령 ○ 적립금의 보관, 관리 및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업무 등

- 특히 각종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자산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초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 및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 특히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신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자산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려는 경향이 있음

3) 한편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IRA형 개인퇴직계좌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신탁업 활성화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문화적 문제점 등이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종합재산신탁제도의 비활성화, 신탁업과 기타 자산관리 업무와의 차별성 부족 등 제도적인 측면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에 도입된 종합재산신탁제도는 집합투자펀드(Collective Investment Fund)의 불허용, 세제상의 비혜택, 높은 수수료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증권사의 Wrap Account, 보험사의 변액보험이 도입되면서 자산관리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신탁업무는 이러한 자산관리 업무와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두 업무간 차단벽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 동양적 문화에서 재산을 남에게 맡기거나 자신의 재산이 노출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 전통적인 가족체계 하에서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변호사 등을 통한 유언신탁 등도 활발하지 못함
 - 예컨대 국내 가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신탁될 경우 그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데 부정적인 시각 (신탁자는 수익권만 보유)
 - 앞으로 비중이 높아질 국내 신탁시장에서 영토 확보를 위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의 과열경쟁이 건전한 신탁업 발전을 해칠 우려도 높음
 - 은행권은 자신이 독점했던 시장을 수성(守城)하려는 한편 고령화 사회 진입 과정에서 확대 예상되는 신탁시장의 영토 확장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금전신탁 노하우, 영업기반 및 구조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서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PB(프라이빗뱅킹)과 연계하여 퇴직신탁 등 고령화시대에 선점하려고 할 것임)
 - 반면 증권 및 보험권은 탄력적인 조직과 자원 활용 등으로 국내 신탁시장에서의 영역 확보를 위해 치열한 공성(攻城)이 예견되고 있음 (중대형 증권사들은 자산관리를 위한 랩어카운트(Wrap Account)와 신탁업을 결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장공략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

- 한편 외국계 증권사 및 보험사들은 성장 전망이 높은 국내 고령 퇴직시장을 놓고 본국의 선진화된 퇴직연금 및 퇴직신탁 상품을 배경으로 국내 시장 공략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3. 신탁업 활성화 과제와 건전 경쟁체제 확립

○ 신탁시장의 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신탁시장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제도적인 보완) 신탁업 활성화와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05년 도입된 종합재산신탁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산신탁에 대한 세제 및 수수료 혜택 등 제도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⁴⁾
- 신탁을 이용한 투명한 부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 상속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
- 미국과 같이 신탁업무와 PB 업무와 연계되어 신탁영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업무의 통합 내지 역할 조정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신탁업이 자칫 부유층 고객만을 대상으로 될 우려가 높은 바, 신탁업의 운용이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등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신탁업 방향을 유도
- 부의 사회적 순기능 향상을 위하여 慈善신탁 등의 절차를 별도로 간소하게 정하여 동 신탁을 장려할 필요
- 금융업종 벽을 넘어서 진행될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 속에서 고객의 불법 자산관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정비 및 감독당국의 적절한 사전 지도체계를 확립해야 함
-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본격 신탁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경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신탁업무 전문가 스카우트 전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4) 종합재산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 지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과 유사하나 수탁재산의 범위가 금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가증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과 차이가 있음

- (금융기관의 특화 전략) 신탁업시장에서 금융기관간 과다 경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 특성을 살린 신탁업 영위할 필요가 있음
 - 은행권의 경우 보수적이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40~50대의 기존 부유층으로 대상으로 재산증식 보다는 주로 상속, 증여, 절세 등 재산관리에 치중할 필요 (미국의 경우 은행신탁의 전통적 자산관리 대상이 유산임)
 - 중대형 증권사들은 주로 공격적이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30~40대의 여유자산을 주로 주식, 채권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예치하는 등 재산증식에 치중할 필요)
 -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우량고객에 대한 생애관리(life cycle) 개념의 자산관리와 신탁업을 결합하여 시장을 공략할 필요 (VIP 고객을 대상 은 퇴·상속 등 노후생활 위주의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서비스 차원에서 신탁업을 연결시킬 것으로 전망)

- (신상품 개발)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선진형 재산관리형 신탁상품을 개발·확대할 필요
 - 개인의 일생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저축, 교육대출, 주택대출, 노후대비, 유산처리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적극적으로 타금융기관과 차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무리한 확대를 지양하고 국내 시장의 규모와 성장속도, 각 금융기관의 관련 서비스 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품 제공 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운영을 개선할 필요 

박덕배 연구위원(3669-4009, dbpark@hri.co.kr)

5)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 자산종합관리계좌 또는 자산종합관리서비스) 1975년 미국 스타미스바니증권사가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증권사가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wrap)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는 신종 금융상품. 고객 입장에서선 자산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셈이며, 증권사는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를 받음

< 보 론 >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게도 신탁업무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은행이 독점한 신탁업무가 사실상 경쟁체제로 진입함
- 기존 증권·보험사가 신탁업무를 겸영할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 대신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증권·보험사의 신탁업무 겸영을 허용함
 -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2,500억원과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보험사는 자기자본 1,000억원과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 설정
 - 신탁업무 겸영 금융기관의 고유부문과 신탁부문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운용을 제한(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금지,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계좌별 수탁금액 3억원 미만에 한해 제한)
 - 고유부문 보유 유가증권의 매입을 제한하고, 계열회사 유가증권의 운용한도 설정 등

< 신탁업 감독 규정 등의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내용
신탁업무 겸영 인허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요건을 추가 ○ 주요 출자자 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을 배제
고유부문과 신탁부문간 이해상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자금 운용 시 고유부문의 유가증권 중개를 금지하되, 3억 원 이상 거래액 특정금전신탁 또는 장내거래주식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탁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자금 운용한도를 계좌별 수탁금액의 10% 이내로 설정
감독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겸영증권·보험회사가 신탁의무 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연간 공탁금액한도를 자본금의 2,500분의 1로 경감 ○ '98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연금형 불특정금전신탁의 보수율을 자율화 ○ 퇴직연금신탁에서 고객이 자행예금 운용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탁자금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 ○ 감독당국의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노력 지속 등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